

憲法改正案 提案書


憲法第九十八條 및 國家再建非常措置法第九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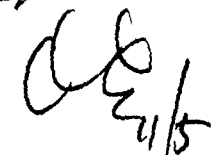
規定에 依하여 憲法改正案을 別添과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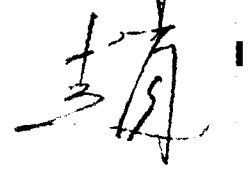
提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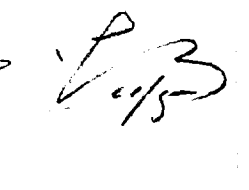
千九百六十二年十一月五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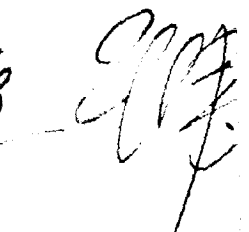
最高委員

朴正熙 

이규일 

趙始衡 

김용준 

김재홍 

공백

最高委員

吳致中

"

金東河

"

張性煥

"

金斗基

"

李孟基

"

金

"

金

"

金

"

朴圓

"

공백

最高委員

鄭在雄

洪鐘 ~~振~~ 弘

姜南柳 ~~振~~

金炯北 ~~振~~ ³

玉昌 ~~振~~

柳陽津 ~~振~~

林智浩 ~~振~~

林海 ~~振~~

李錫 ~~振~~ 梅

공백

憲法改正案 提案理由書

공백

憲法改正案 提案理由書

革命公約에서 밝힌바에 의하여 民政移讓을 斷行함이 앞서 眞正한 民主國家인 第三共和國의 基盤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憲法改正案을 提案한다。

五.一六 革命의 理念은 腐敗와 不正과 貧困에서 우리 겨레와 나라를 救濟하고 새로운 民主福祉國家를 再建하려는데 있다。

그러므로 民政移讓에 앞서 이와같은 崇高한 理念이 앞으로 誕生될 第三共和國에 繼承되어 다시는 過去와 같은 쓰라린 前轍을 밟지 않도록 새로운 國家의 튼튼한 基盤을 다짐하는 것은 革命政府의 神聖한 義務가 아닐수 없다。

이에 앞서서 革命政府는 이러한 義務를 다하기 위하여 널리 國民의 輿論을 綜合하고 眞摯한 研究와 檢討를 거친 끝에 憲法改正案을 作成하고 主權을 가진 國民의 決定으로서 第三共和國의 基盤을 마련코자 하는바이다。 101

공백

여기에 우리가 마련한 憲法改正案의 主要한 特徵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自由權, 生存權, 參政權 등의 國民의 基本權을 最大限으로 保障하였으며,

2. 健全하고 民主적인 現代的 政黨制度를 樹立하여 眞正한 代議民主政治의 基礎를 確立하였고,

3. 참다운 國民意思를 代辯하고 代辦하고 能率적인 議會政治를 期約할수 있는 合理的인 國會의 組織과 運營을 規定하였으며,

4. 安定되고 일할수 있는 民主적인 政府形態를 擇하였고

5. 國民의 權利保障의 最後保壘인 司法權의 獨立과 民主化에 萬全을 期하였으며,

6. 時急한 民生苦를 解決하고 國民經濟의 早速한 發展을 期할수 있는 經濟體制와 機構를 마련하였고

7. 共產勢力의 侵略을 粉碎하고 굳건한 國家

공백

安全을 保障할수 있는 機構를 設置하리라

나. 國家의 最高法規인 憲法의 改正은 主權者인 國民이 直接 決定하도록 하였다.

1962年 11月 5日

提案者

國家再建最高會議 最高委員 朴正熙 李周一

姜尚郁 吉在號

金東河 金容珣

金潤根 金斗燦

金在春 金振暉

金炯旭 朴圓彬

朴泰俊 吳致成

玉昌鎬 柳陽汴

柳炳賢 李錫蒼

李孟基 張盛煥

鄭世雄 趙始衡

공백

洪鐘哲

~~104~~

75

공백

憲法改正案

공백

憲法改正案

大韓民國憲法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韓民國憲法

前 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 1 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을 계승하고 4, 19 義擧와 5, 16 革命의 理念에 임각하여 새로운 民主共和國를 建設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서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타과하고 民主主義 諸制度를 확립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衡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 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것을 다짐하여,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6 年 月 日





第 1 章 總 綱

第 1 條 ①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 2 條 大韓民國의 國民의 要件은 法律로 정한다.

第 3 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附屬島嶼로 한다.

第 4 條 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고 侵略的戰爭을 否認한다.

第 5 條 ① 이憲法에 의하여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공백

② 外國人에 대하여는 國際法과 條約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地位를 보장한다.

第 6 條 ①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
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 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障~~ ^{보장} 된다.

第 7 條 ① 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
數政黨制는 ~~保障~~ ^{보장} 된다.

② 政黨은 그 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
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參與하는 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
다.

공백



③ 政黨은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大法院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大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8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國家는 國民의 基本的人權을 最大限으로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9條 ① 모든 國民은 法앞에 平等하다.

공백

千予志中，討論・宗教・社會
的・科學的・法律的・經濟的・
社會的・文化的・生活的 모든 領域에
對해서 對稱을 받지 不되한다.

②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간의
對稱을 受하지 不되한다. 이 階級은 永恆로 存在
를 受하지 不되한다.

宗教 制度의 特徵은 科學 思想 階級의
對稱을 受하지 不되한다. 이 階級은 永恆로 存在
를 受하지 不되한다.



第一 次 社會의 階級은 科學의 自由
를 受하지 不되한다. 이 階級은 永恆로 存在
를 受하지 不되한다. 科學, 宗教, 經濟, 社會.

공백

拷問 또는 處罰을 받지 아니하며,

제 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強

制勞役을 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事上 ~~자신~~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強

要당하지 아니한다.

③ 逮捕 · 拘禁 · 搜索 · 押收에는 檢察官

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現

行犯人인 경우와 3年 以上の

罪에 해당 하는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공백

④ 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받을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체를



가진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경우에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수
없을 때에는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받을 때에는
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講求할

權利를 가진다. 私人으로부터 身體의
自由의 不法한 侵害를 받은 때에도 法
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救濟를 法
院에 講求할 權利를 가진다.

출판사
정음출판사

⑥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



공백

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自意로 陳

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被告人の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唯一한 證據인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거나 이를 理由로 處罰

할 수 없다.

第 1 1 條 ① 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

律에 의하여 犯罪을 構成하지 아

니 하는 行爲로 訴追되지 아니

공백

하며, 同一한 犯罪에 對하여 各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國民은 違反立法에 의하여 於
政權의 制限 또는 財産權의 剝奪을
받지 아니한다.

第 12 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
를 가진다.

第 13 條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 14 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變更을 爲하
여 國家의 法律에 依하여 國家의 稅收에
對하여 法律에 依하여 課稅를 受하지 不得하다.

第 15 條 모든 國民은 秘密의 侵



흥반지 아니한다.

第 16 條 ① 모든 국민은 宗教의 自由를 가진다.

② 國教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 17 條 모든 국민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 18 條 ① 모든 국민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 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公家道德과 社會倫理를 위하여
는 映畫나 演藝에 대한 檢閱을 할
수 있다.

③ 新聞이나 通信의 發行施設基準은

✓ 法律로 定할 수 있다.

④ 屋外集會에 대하여는 그 時間과 場
所에 관한 規程을 法律로 定할 수
있다.

⑤ 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家道德이나 社會倫理를 侵害

하지 아니하는 한에 한하여

第 13 條 ① 또는 國회의 議決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 著作者 · 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 20 條 ① 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

✓ 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 정

한다.

②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적합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 · 使

✓ 用 또는 制限은 法律로써 하되 相當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 21 條 모든 國民은 20 歲가 되면 法

律이 정하는 바에 ~~117~~ 하여 公務員選

공백

學權을 가친다.

第 22 條 三 是 憲 法 上 法 律 上 自 由 之

바 外 의 許 許 公 務 處 理 權 限 을 가 친 다.

第 23 條 ① 三 是 國 民 上 法 律 上 自 由 之

바 外 法 律 上 國 家 機 關 上 文 書 上 請

願 等 權 限 을 가 친 다.

② 國 家 機 關 上 法 律 上 自 由 之 權 限 을 가 친 다.

第 24 條 三 是 國 民 上 憲 法 上 法 律 上 自 由 之

바 外 法 律 上 國 家 機 關 上 文 書 上 請

願 等 權 限 을 가 친 다.

② 國 家 機 關 上 法 律 上 自 由 之 權 限 을 가 친 다.

三 是 國 民 上 憲 法 上 法 律 上 自 由 之



1289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害飲食物供給·
捕虜에 관한 罪中 法律에 정한 경우, 및 非常戒
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
法會議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理由가 없는 限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 25 條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 26 條 公務員의職務上不法行爲

로損害를받은國民은國家 또는

公共團體에賠償을請求할수있다. 그

리나, 公務員 자신의責任은免除

되지아니한다.

第 27 條 ① 모든國民은能力에 따라

균등하게教育을받을權利를 가진

다.

② 모든國民은그보호하는어린이

에게初等教育을받게할義務를 지

다.





③ 義務教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 教育의 自主性과 政治的 中立性은 保障되어야 한다.

⑤ 教育制度와 그 運營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 28 條 ①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方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內容과 條件



을 민주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 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로 정한다.

④ 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第 29 條 ① 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
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 · 團體交
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 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로 인정된者
를 제외하고는 團結權 · 團體交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질수 없다.

第 30 條 ① 모든國民은 人間다운 生活
을 할 權利를 가진다.

~~122~~





④ 國家는 社會保障의 增進에 工력하
여 노력한다.

⑤ 生活能力이 減弱한 國民은 法律이 정한
한 바에 따라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 31 條 正當 國民은 婚姻의 純潔과 保
護의 義務을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 32 條 正當 國民의 自由와 權利은 憲法
에 對學의 對한 理由로 輕視되
여서는 안된다.

⑥ 國民은 正當 理由로 權利을 秩序
維持에 必要한 限制를 받는다. 憲法에
對한 限制는 法律에 對한 限制보다 嚴
重하다. 制限의 程度는 正當 理由에 依
하여 定한다.

공백

제 33 조 본 조의 전 내용을侵害할 수 없다.

第 33 條 모든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 34 條 모든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國際의 義務를 진다.

第 三 章 政 治 機 構

第 一 節 國 會

第 35 條 國會議원은 國會에서 會議한다.

第 36 條 國會議원은 國民의 普通・平等・

直接・秘密選舉의 方法에 依해서 選出된 議

員으로 構成한다.

國會議員의 數는 150人以上



200 人 以下 之 範圍 안에 於 法律 上 處
한 다.

③ 國會議員 候補 者 中 於 其 中 者 之 所
屬 政黨 之 主張 言 明 해야 한다.

④ 國會議員 之 選舉 에 關한 事項 是
法律 上 處 한다.

第 3 條 國會議員 之 任期 是 一年 三 三
월 也.

第 3 條 縣 國會議員 之 任期 本 實 籍 是

離 居 於 4 日 以上 之 縣 國會議員 之 離

居 於 4 日 以上 之 縣 國會議員 之 離

居 於 4 日 以上 之 縣 國會議員 之 離

居 於 4 日 以上 之 縣 國會議員 之 離



第 39 條 國會議員은 大統領 · 國務總理 ·

國務委員 · 地方議會議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수 없다.

第 40 條 國會議員은 一地位를 濫用하

여 國家 · 公共團體 또는 法律이 정하는

企業體와의 契約 또는 一處分에 의하

여 財産上의 權利나 利益 또는 職位

를 取得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取

得을 알선할수 없다.

第 41 條 ① 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

외하고는 會期中 國會의 同意없이 逮

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 國會議員이 會期前에 逮捕 또는 拘



제. 된 때 에 는 現行犯人이 아닌 限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
된다.

第 4 2 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外
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 한다.

第 4 3 條 ① 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年 1 回 集會된
다.

② 緊急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 分の 1 以上の 要
求에 의하여 國會議長은 國會의 臨
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③ 定期會의 會期는 120 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 日을 초과할 수 없다.

第 44 條 國會는 議長 1 人과 副議長 2 人을 選舉한다.



第 45 條 國會는 ~~憲法~~ 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 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 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 46 條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단



老幼別條 然, 出席 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47 條 國會에 提出된 法律案 기타



의 議案은 會期中에 議決되지 못한
理由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
會議員의 任期가 滿了된 때에는 例
외로 한다.

第 4 8 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第 4 9 條 ①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5 日以内に 大統
領이 公布한다.

② 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
領은 前項의 期間안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送付하고 再議를 要求할 수

文字删除
四字追加

있다. 國會의 閉會中에도 ^{또한 같다.}
~~이러한 수 있다.~~

~~129~~



공백

제정

① 大統領은 法律案의 一部에 ~~대~~ ~~수~~ ~~하~~ ~~다~~,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다 再議를 要
求할 수 있다.

④ 再議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
席과 出席議員 3分の2以上の 贊成으
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⑤ 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안에 公布
나 再議의 要求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⑥ 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
에 의하여 確定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前項에 의하여 法律
이 確定된後 또는 第4項에 의한 確
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後 5日以内
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 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
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50條 ① 國會은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確定한다.

② 政府은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



成하여 會計年度開始 120日前까지
國會에 提出하고, 國會는 會計年
度開始 30日前까지 이를 議
決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期間안에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때
까지 다음 各號의 經費를 歲入의
範圍안에서 前年度 豫算에 準하
여 支出할수 있다.

1. 公務員의 報酬와 事務處理에
필요한 基本經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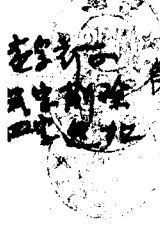
2.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132~~維持費와 法律上



支出의 義務가 있는 經費.



3. 이미 豫算上 承認된 ~~繼~~續費.



第 51 條 ① ~~한~~ 計年度를 넘어 ~~한~~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
하여 繼續費로기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 豫測할수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 超過支出에 相當하기 위한 豫備費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
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
어야 한다.

第 52 條 豫算成立後에 變경 事由로 인하
여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공백

있을 때에는, 政府는 追加更正豫算案
을 補成하여 國會에 提出할 수 있다.

第 5 3 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
府가 提出한 支出豫算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
다.

第 5 4 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外에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締結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
을 얻어야 한다.


第 5 5 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
로 정한다.

第 5 6 條 ① 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
保障에 관한 條約, 國際組織에 관한

공백

條約, 通商條約, 漁業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財政的負擔을 지우

는條約  國軍隊의 地位에 관한條

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條約의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 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領域안에서의 駐

留에 대하여도 國會는 同意權을 가

진다.

第 57 條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며, 이

에 필요한 書類의提出, 證人의 出席

과 證言이나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다만, 裁判과 進行中인 犯罪搜

査· 訴追에 간섭할 수 없다.

~~134~~

~~135~~ 44

공백

第 58 條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

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出席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意見を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으며,

國會나 그 委員會 또는 國會議員 30 人

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

答辯하여야 한다.

第 59 條 ① 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

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建議는 在籍議員過半數의 賛成이 있어야 한다.

③ 第 1 項과 第 2 項에 의한 建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5~~

~~136~~

43



第60條 ① 國會는 法律에 저속되지 아니하는

範圍 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 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

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 議員을 除名하려면 在籍議員 3분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 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

院에 提訴할 수 있다.

第61條 ① 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

行政各部의 長·法官·中央選舉管理委員會

委員·監查委員 ~~기타~~ 法律에 정한 公

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

老吳刪除

공백

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① 前項의 彈劾訴追는 國會議員 30人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 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決度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第 62 條 ① 彈劾事件을 審判하기 위하여 彈劾審判委員會를 둔다.

② 彈劾審判委員會는 大法院長을 委員長

공백

으로 하고 ② 大法院判事 3人과 國會

議員 5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다

만, 大法院長을 審判할 경우에는

國會議長이 委員중이 된다.

③ 彈劾決定에는 構成員 6人 以上の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 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

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 는

아니 한다.

⑤ 彈劾審判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 2 節 政 府

第 1 款 大 統 領

第 63 條 ① 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② 大統領은 外國에 對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第 64 條 ① 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하여 選出된다. ② 大統領의 任期은 5 年에 滿任 期間에 滿하여 再選은 國會의 選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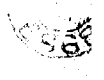
③ 大統領은 選舉에 對하여 宣誓을

공백

會議員의 被選舉權이 있고 選舉日
 現在 하고 하여 5年以上 國內에 居住
 하고 小。歲에 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 公務로 外國에 派遣된 期間은 國
 內 居住 期間으로 본다.
 ③ 大統領 候補가 되려 하는 者는 所屬 政黨
 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大統領 選舉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
 한다.

第 65 條 ① 國民이 大統領을 選舉하는
 경우에 最高 得票者가 2人以上 인 때
 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
 석한 公開 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
 를 當選者로 한다.

공백



● 大統領 候補者 가 1 次 日 때에는 그
 得票數 가 選舉權者 總數 의 3 分 의 1
 以上 이 아니 면 大統領 으로 當選 될 수
 없 다 .

第 66 條 ① 國會 가 大統領 을 選舉 하는
 경 우 에 는 在籍 議員 3 分 의 2 以上 의
 出席 과 出席 議員 3 分 의 2 以上 의
 贊成 을 얻 은 者 를 大統領 當選 者 로
 한 다 .

② 前項 의 得票 者 가 없 는 때 에 는 2 次
 投票 를 하 고 , 2 次 投票 에 도 前項



의 得票者가 없는데는 最高得票者
가 1人이면 最高得票者와 決選者에
대하여, 最高得票者가 2人 以上이면
最高得票者에 대하여, 決選投票를
함으로써 多數 得票者를 大統領 當
選者로 한다.


第 67 條 ① 大統領의 任期가 滿了 되는데
때에는 任期滿了 70日 乃至 40
日 前에 後任者를 選舉한다.

② 大統領이 關位된 때에는 즉시 後任
者를 選舉한다.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



하지만 判決 기타의 事由로 工資格
을 喪失한 때에도 또한 같다. 868

第 68 條 ①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을 한다.

는 國憲을 遵守하고 國家를 保
衛하며 國民의 自由와 權利의 增進
에 노력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② 前項의 宣誓에는 國會議員과 大法
院의 法官이 참석한다.

공백

第 69 條 ① 大統領의 任期는 4 年으로 한다.

② 大統領이 關位된 경우의 後任者는 前任者의 殘任期間中 在任한다.

③ 大統領은 1 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 70 條 大統領이 關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에 定한 國務委員의 順位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 71 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批准 하고 外交使節을 信任 接受, 또는 派遣하고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공백

第 72 條 ① 大統領은 憲法 及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 國軍의 組織 及 編成은 法律로 정
한다.

第 73 條 ① 內憂 · 外患 · 天災 · 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 · 經濟上의 危機에 陷
서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 하여 緊急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
의 集會를 기다릴 餘유가 없을 때에
限하여, 大統領은 最少限으로 필요한
財政 · 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
을 發할 수 있다.





② 國家의 安穩에 關係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
 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限하여,
 大統領은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
 令을 發할 수 있다.

③ 第1項과 第2項의 命令 또는 處分은 지체
 없이 國會에 呈報하여 그 承認을 받
 어야 한다.

④ 前項의 命令 또는 處分을 發할 때에
 그 命令 또는 處分의 內容을 國會에 報告
 書를 發할 수 있다. 此間, 그 命令 또는 處分

의 改正 正三 廢止된 條를 法律은



그 命令이 承認을 얻지 못한 때부터
當然히 效力을 회복한다.

① 大統領은 第3項과 第4項의 事由를 지체 없
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74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具體的으
로 範圍를 정하여 委任 받은 事項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
項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發할 수 있
다.

第75條 ① 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 또는 公共의

공백

安寧秩序를維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는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戒
嚴을宜布할수 있다.

②戒嚴은非常戒嚴과警備戒嚴으로
한다.

老字新正



③戒嚴이宣布된 때에는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令狀制度, 言論
· 出版 · 集會 · 結社의自由, 政府나
法院의權限에관하여특별한措置
를할수있다.

老字新正



④戒嚴을宣布한 때에는大統領은
지체없이國會에통고하여야한다.

⑤國會가戒嚴의解除를要求한때에




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 6 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命한다.

第 7 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 · 減刑 · 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① 一般 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 赦免 · 減刑 · 復權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 8 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  榮典을 수여한다.



第79條 大統領은 國會에 出席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80條 大統領의 國法上 行狀은 文
書로 附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과
關係國務委員의 副署한다. 筆事에 關
한 것도 또한 같다.

第81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
行 政 各 部 長 ^{각각} 法學이 성하는 公家나 職을
겸할 수 있다.

第82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을
罪을 犯한 者에 對하여 刑을 科할 權은 在 職
中 刑事上 否 國務總理 및 國務委員 是 也.

공백

第2款 國務會議

第83條 ① 國務會議은 政府의 權限

에 속하는 主要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 國務會議은 大統領·國務總理와 10

人 以上 20 人 以下의 國務委員으로

構成한다.

第84條 ① 國務總理은 大統領이 任命

하고,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議으로

且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 軍人은 現役을 免後가 아니면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① 國務總理은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第 85 條 ①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② 國務總理은 大統領을 補佐하고 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第 86 條 內閣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行할 수 있다.



1. 國政의 基本的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重要한 對外政策.

3. 條約案·法律案과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の 基本計劃,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關한 重要事項.

5. 戒嚴과 解嚴.

6. 軍事에 關한 重要事項.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要求.



8. 榮典授與。

9. 徵免・減刑并 復職。

10. 行政各部關於 權限并 劃定。

11. 政府各部 權限并 委任 互任

配定并 其他 基本計劃。

12. 國防委員會 組織 設備 等項。

13. 國防委員會 組織 設備 採取 措施 並 其他 關係。

14. 國防委員會 組織。

15. 政府各部 提出 國防 委員會 內容 及 其他 關係 等項 並 其他 關係。

16. 陸軍總長・海軍總長・空軍總長・參謀總長・各軍參謀總長・海軍參謀總長・空軍參謀總長。



기타 法律에 정한 公務員과 중

요한 國營企業體 管理者의 任命.



17.



기타 大統領 ·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한 事項.

第87條 ① 國家安全保障에 關連되는

對外政策 · 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樹

표에 關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先

서 大統領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을 둔다.

② 國家安全保障會議은 大統領이 主宰한

다.

③ 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 · 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 3 款 行政各部

第 88 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中
에서 國務總理의 提議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 89 條 國務總理는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
한다.

第 90 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
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

第 91 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



務範圍三 法律로 정한다.

제정

第 92 條 監查院

第 92 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에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所屬 下에
監查院을 둔다.

第 93 條 ① 監查院은 院長을 포함 한
5 人以上 11 人以下의 監查委員으로
構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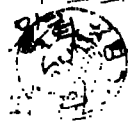
② 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

공백

受。任命日期，其任期是 4 年之長
 하 其 一 次 以 限 制 其 連 任 得 以 三 次 爲 限。
 ③ 院 長 之 繼 任 者 任 期 以 前 任 者 之 任 期 間 爲 限
 者 之 任 期 是 前 任 者 之 任 期 間 以 內 爲 限
 한 다 .

④ 監 查 總 長 是 院 長 之 提 議 經 大 統
 領 之 任 命 其 任 期 是 4 年 之 長 ^{하 되}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될수 ^{한 다 .}
 第 94 條 監 查 院 是 歲 入 及 歲 出 之 算
 算 每 三 年 檢 査 一 次 大 統 領 及 國 會 之
 國 會 之 任 命 及 免 職 由 大 統 領 及 國 會 決 定 之

拾七號
 卷美前
 第 92



第 95 條 監 查 院 之 監 査 範 圍 及 監 査 員 之 資 格
 及 監 査 時 家 長 之 資 格 及 監 査 員 之 範 圍
 查 制 除 其 外 其 他 諸 事 項 是 法 律 所 定 之 事 項 也

공백

第 3 節 法院

第 96 條 ① 司法權은 法官으로 組織된
法院에 속한다.

② 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
法院으로 組織된다.

③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 97 條 ① 大法院에 部를 들 수 있다.

② 大法院의 法官의數는 16 人以下로
한다.

③ 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



로 정한다.

98 條 法官은  法 律 에 의
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
다.

第 99 條 ① 大法院長인 法官은 法官推
薦會議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國會의 同意를 얻어 任命한다. 大統
領은 法官推薦會議의 提請이 있으면
國會에 同意를 要請하고, 國會의 同
意를 얻으면 任命하여야 한다.

② 大法院判事인 法官은 大法院長이
法官推薦會議의 同意를 얻어 提請하
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이 경우에 提

공백

請이 있으면 大統領은 이를 任命하여야 한다.

③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大法院判事會議의 議決을 거쳐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④ 法官推薦會議는 法官 4人, 辯護士 2人, 大統領이 指名하는 法律學教授 1人, 法務^部長官과 檢察總長으로 構成한다.

⑤ 法官推薦會議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 100 條 ① 大法院長인 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連任될 수 없다.

②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法



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될 수 있다.

② 法官의 停年은 65 歲로 한다.

101 條 ① 法官은 彈劾 또는 罷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또는 불리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 法官이 중대한 心身上의 障礙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 102 條 ①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때에는 大法



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② 命令 · 規則 ·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때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第 103 條 政黨解散을 命하는 判決은 大法院法官 定數의 5分之 3 以上の 贊成을 얻어야 한다.

第 104 條 大法院은 法律에 拘束되지 아니하는 範圍 안에서 訴訟에 관한 簡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 105 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



공백

開한다. 다만, 審理는 安寧秩序를 방해
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害할 虞가 있을 때에
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 할
수 있다.

第 106 條 ① 軍事裁判을 管轄하기 위
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法會議을 들
수 있다.

② 軍法會議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③ 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
屬의 犯罪나 軍事에 關한 間諜罪의

경우  哨兵·哨所·有害飲食物支給·捕虜
 에 關한 罪中 法條에 定한 경우에
限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第 4 節 選舉管理

第 107 條 ① 選舉管理의 公正을 期하기

위하여 選舉管理委員會를 둔다.

②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2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2人과 大法院 判事會議에서 選出하는 5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委員長은 委員中에서 選出한다.

③ 委員의 任期는 5年으로 1回 連任 될수 있다.

④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지 政治에 關한 發言을 禁한다.

공백

委員은 彈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法令의 範圍 안
에서 選舉의 管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
할 수 있다.

⑦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라 ^{필요}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 108 條 ① 選舉運動은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에 정한 範圍 안에서 하되 均등한
機會가 보장 되어야 한다.

② 選舉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負擔시킬
수 없다.



第5節 地方自治

 第109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고 財産을 管理하며 法令의 範圍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種類는 法律로 정한다.

第110條 ①地方自治團體에는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공백

卷之二



第 四 章 經 濟

第 111 條 ①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個人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
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 國家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
本的 需要를 충족시키는 社會正義의
실현과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위하여 필요한 範圍안에서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한다.

第 112 條 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

源 · 水産資源 ·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一定한 期間 그採取 · 開發

공백

五는 利用을 特許할 수 있다.

第 113 條 農地인 耕作權人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금지된다.

第 114 條 國家은 農地와 山地의 交
束의 利用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必要한 制限
과 義務을 課할 수 있다.

第 115 條 國家은 農民·漁民과 中小
企業者의 扶助를 爲한 爲한 爲한 爲한
組合을 設치할 수 있다. 江原道에 設치한 組合은
보통 조합이다.

第 116 條 國家은 農民·漁民과 中小
企業者의 扶助를 爲한 爲한 爲한 爲한

공백

第 117 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
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에 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
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第 118 條 ① 國民經濟의 발전과 이를
위한 科學振興에 관련되는 중요한 政
策樹立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
다 經濟·科學 審議會議를 둔다.

② 經濟·科學 審議會議는 大統領이 主
宰한다

③ 經濟·科學 審議會議의 組織·職務
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5章 憲法改正



第119條 ① 憲法改正의 提案은 國
會의 在籍議員 3分の1以上 또는
國會議員選舉權者 50萬人以上の
賛成으로서 한다.

②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30日以上の 期間 이를 公표 하
여야 한다.

第120條 ① 國會은 憲法改正案이 公
표된 날로부터 60日以内に 이
를 議決하여야 한다.



② 憲法改正案에 대한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분의2以上の 贊成을 얻
어야 한다.

第121條 ① 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
決한後 60日以内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舉權者 過半數의 長
票과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
야 한다.

② 憲法改正案이 前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確定되며, 大統領
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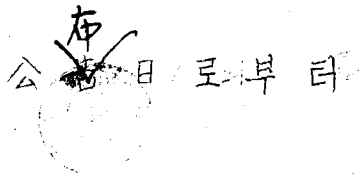
공백

附 則

第 1 條 ① 이 憲法은 이 憲法에 의한 國會
가 처음으로 集會한 날로부터 施行
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
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 · 國會議員의 選舉 기타 準備는
이 憲法 施行前에 할 수 있다.

② 國家再建非常措置法은 이 憲法의 施
行과 동시에 그 效力을 喪失한다.

第 2 條 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大統領
과 國會議員의 選舉 및 最初의 國會
集會는 이 憲法의 公^布布~~告~~日로부터



공백

1年以內에 한다. 이에 의하여選舉된大統領과國會議員의任期는最初의國會의集會日로부터開始되고 1967年6月30日에終了된다.

~~제3조~~ 第3條 國家再建非常措置法에 의거한法令과條約은 이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限 그效力을 持續한다.

第4條 ①特殊犯罪處罰에 關한 特別法·不正選舉關聯者處罰法·政治活動淨化法, 및 不正蓄財處理法과 이에 關連되는 法律은 그效力을 持續하며 이에 對하여 異議를 할수 없다.

공백

② 政治活動淨化法, 및 不正蓄財處理法과
이에 관련되는 法律은 이를 改廢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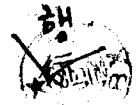
第 5 條 國家再建非常措置法 또는 이에
의거한 法令에 의하여 행하여진 裁
判·豫算 또는 處分은 그效力을 持
續하며 이憲法을 理由로 提訴할
수 없다.

第 6 條 이憲法施行當時의 公務員과 政
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憲
法에 의하여 任命된것으로 본다. 다
만, 이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
變更된 公務員은 이憲法에 의하여





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職務를



한다.

第 7 條 ① 이 憲法施行當時에 이憲法에

의하여 새로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職務를

행한다.

②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設置되는

機關은 이憲法施行後 1年以内に 構

成되어야 한다.

③ 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地方議會

의 構成時期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공백

第 8 條 國土收復後의 國會議員의 數는
다음 法條에 準한 다.

第 9 條 이 憲法施行當時의 大統領令·
國務院令 及 閣令은 同 憲法에 準한
大統領令으로 본다.

공백